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학습자용 학습자료

과목별핵심학습자료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재급여의 종류
학습자료	산재급여의 종류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장해급여
학습자료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학습자료	 제1급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판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저2급 한쪽 눈이 실명,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판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형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한쪽 눈이 실명,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밀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흥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흥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등록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등록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등록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직업재활급여
학습자료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말하며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이 있습니다.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재보험 비급여 대상
학습자료	산재보험 비급여 대상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재보험 진료비 산정기준
	산재보험 진료비 산정기준
학습자료	 입원료의 산정 입원일로부터 51일에서 150일까지는 해당점수의 90퍼센트만 산정하고, 입원일 151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점수의 85퍼센트만 산정하며 종합전문요양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선치한 보험시설의 경우,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점수의 100퍼센트에 병원관리료를 추가하여 산정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기관에 관계없이 해당점수의 100퍼센트를 산정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의 산정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하며, 다만 휴일, 야간 근로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로'를 지급합니다. 이송료 산정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하며 자택에서 의료기관으로 통원치료 받으러 갈 때 버스 등을 이용한 경우의 교통비를 산정합니다. 물리치료비 산정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이학요법료를 산정함에 있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관리료 산정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 산정시 건강보험입원환자의 초일분 약품관리료와 투약일수의 곱으로 산정합니다. • 자기공명 진단비용의 산정
	자기공명영상진단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이의심사 청구
학습자료	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이의심사 청구 의료기관은 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이의 신청서와 함께 진료기록부 사본 1부, 주치의 소견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약사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요양급여
학습자료	요양급여 산재의료관리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는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고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항목 등은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하는 경우 전원요양신청서에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주치의사 소견을 기재하여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하고 해당지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생활 근거지나 수술 및 전문적 치료의 필요성 등 전원요양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 확인하며 전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의료기관,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치료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요양기간은 상병의 치유까지 진료계획을 제출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고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진료계획서를 공단이 심사하여 치료기간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후 재해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고 요양연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단이 제3의료기관에 특별진찰 등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질병이 발견된 경우 최초요양신청 당시 진단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상병이 있는 경우 해당지사에 요양 연기 및 기타신청서를 이용하여 추가 상병을 신청하며 공단 지사에서 재해경위, 최초승인상병 등과 의학적 인과관계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요양급여
학습자료	요양급여 산재의료관리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는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고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항목 등은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하는 경우 전원요양신청서에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주치의사 소견을 기재하여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하고 해당지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생활 근거지나 수술 및 전문적 치료의 필요성 등 전원요양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 확인하며 전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의료기관,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치료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요양기간은 상병의 치유까지 진료계획을 제출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고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진료계획서를 공단이 심사하여 치료기간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후 재해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고 요양연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단이 제3의료기관에 특별진찰 등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질병이 발견된 경우 최초요양신청 당시 진단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상병이 있는 경우 해당지사에 요양 연기 및 기타신청서를 이용하여 추가 상병을 신청하며 공단 지사에서 재해경위, 최초승인상병 등과 의학적 인과관계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훈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심사청구·재심사청구신청 시 근로자 주의 사항
학습자료	심사청구·재심사청구신청 시 근로자 주의 사항 산재보상 청구는 재해자(또는 유족)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고 현장사진, 사고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하고 사고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맞게 기재되었나 확인해야 하며 타인에 의하여 재해를 당했다면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증인(목격자)을 확보해 두어야 하고 응급치료 및 기타 비용지출이 있으면 영수증을 잘 보관하였다가 추후에 청구하며 진단서, 요양급여청구서 등 관련서류 일체는 필히 복사해서 보관해야 하고 산재보상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산재보상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고발생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고 장기간 요양할 경우에는 상향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상을 받으며 사망원인이 "사인미상"일 경우에는 꼭 부검을 해야 하고 일단 산재불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므로, 산재신청시 가능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